의안번호	제 2764 호
의 결	2024
연 월 일	(제 회)

고성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

제 출 자	고 성 군 수
제출연월일	2024. 4. 1.

고성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

의 안 번 호 제 2764 호

제출연월일: 2024. 4. 1. 제 출 자: 고 성 군 수

1. 개정이유

우리나라 자살사망률은 OECD 38개 회원국 중 1위*라는 오명을 쓰고 있으며, 자살에 대한 관심과 사회적 문제로써 인식이 필요함. 이에 자살 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통해 고성군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자 함.

*국가연령별 표준화 자살률 23.6명, OECD 평균 11.1명의 2배

2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의 목적 및 정의 (안 제1조 ~ 제2조)
- 나.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(안 제3조)
- 다. 자살예방센터의 설치에 관한 사항(안 제4조)
- 라. 자살예방 상담 및 교육 등에 관한 사항(안 제5조)
- 마.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(안 제6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1) 「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」제1조, 제2조의2, 제 10조, 제13조, 제17조
- 2) 「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」제8조
- 3) 「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3조

나. 예산조치: 별도 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의

- 성별영향평가: 복지지원과(여성친화담당)
 - · 복지지원과-8119(2024. 2. 23.) 검토의견 반영

조례안	수정안(검토의견)	검토결과
□ 해당조항: 제3조제1항(자살 예방 추진계획의 수립)	□ '성별, 연령별, 계층별, 동기별 등 다각적으로'라는 문구를 추가할 것을 제안함	□ 제3조제1항에 '성별, 연령별, 계층별, 동기별 등 다각적 으로'라는 문구를 추가함

라. 기 타

- 1) 입법예고: 고성군 보건소 건강증진과 공고 제2024-3호
 - 가) 예고기간: 2024. 2. 13. ~ 2024. 3. 4.(20일간)
 - 나) 예고결과: 의견없음
- 2) 규제심사: 해당사항 없음
- 3) 부패영향평가: 해당사항 없음
- 4) 신 · 구조문대비표: 해당사항 없음
- 5) 비용추계서: 미첨부 사유서 붙임

4. 본문: 붙임과 같음

고성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

- 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자살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성군 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 다.
- 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 - 1. "자살"이란 자신의 죽음을 초래할 의도를 가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위를 말한다.
 - 2. "자살시도자"란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는 행위를 하였으나 생존한 자를 말한다.
 - 3. "자살위험자"란 자살의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를 말한다.
 - 4. "자살예방"이란 자살을 유발하는 경제적, 신체적, 정서적, 사회적 문제해결을 위한 각종 서비스 제공으로 자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행위를 말한다.
- 제3조(자살예방 시행계획의 수립) ① 고성군수(이하 "군수"라 한다)는 자살예방 시행계획(이하 "시행계획"이라 한다)을 성별, 연령별, 계 층별, 동기별 등 다각적으로 수립·추진하여야 한다.
 -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- 1. 시행계획의 방향과 추진목표
- 2. 시행계획의 전략 및 추진과제
- 3.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·홍보
- 4. 자살예방을 위한 지역사회협력체계 구축
- 5. 자살위험자 및 자살시도자의 발견ㆍ치료ㆍ지원 및 사후관리
- 6.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- ③ 군수는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내 기관 및 단체에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- 제4조(자살예방센터의 설치) ① 군수는 「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조성을 위한 법률」 제13조제1항 각 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고성군 자살예방센터(이하 "자살예방센터"라 한다)를 「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3조제3호에 따른 고성군정신건강복지센터에 둘 수 있다.
 -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 「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」 제8조제1항에 따른 민간 기관 및 단체에위탁할 수 있다. 이 경우 군수는 위탁업무 수행에 드는 비용을 보조할수 있다.
- 제5조(자살예방 상담 및 교육 등) 군수는 자살예방과 생명존종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자살예방 교육·상담·홍보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.
- 제6조(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) ① 군수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사업

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관·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.

② 군수는 관내 응급의료기관, 경찰서 및 소방서 등 관련 기관과 연계하여 자살위험자, 자살시도자 및 자살자의 유가족에게 사후관리 등의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붙임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고성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- 1. 재정수반요인
 - 해당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○「고성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제4조제1항제2호
 -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3. 미첨부 사유

○ 조례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 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로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함.

작성자: 건강증진과장 최 문 숙

참고

상위 및 관계법령(발췌)

□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(약칭: 자살예방법)
[시행 2022. 12. 11.] [법률 제18900호, 2022. 6. 10., 일부개정]
제1조(목적) 이 법은 자살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책무와 예방정책에 관하여 필요한
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함을
목적으로 한다.

제2조의2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- 1. "자살위험자"란 자살의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를 말한다.
- 2. "자살위해물건"이란 자살 수단으로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거나 가까운 장래에 자살 수단으로 빈번하게 사용될 위험이 상당한 것으로서 제10조의2에 따른 자살예방 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물건을 말한다.
- 3. "자살유발정보"란 자살을 적극적으로 부추기거나 자살행위를 돕는 데 활용되는 다음 각 목의 정보를 말한다.
 - 가. 자살동반자 모집정보
 - 나. 자살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는 정보
 - 다. 자살을 실행하거나 유도하는 내용을 담은 문서, 사진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
 - 라. 자살위해물건의 판매 또는 활용에 관한 정보
 - 마. 그 밖에 위 각 목에 준하는 정보로서 명백히 자살 유발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
- 4. "생명지킴이"란 자살을 할 위험성이 높은 사람을 발견하여 자살예방센터 등 전문 기관에 의뢰·연계하는 사람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교육을 수료한 사람을 말한다.
- 5. "자살예방사업"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.
 - 가. 생명존중문화 조성
 - 나. 자살예방 상담 교육 및 홍보
 - 다. 자살예방 전문인력 양성
 - 라. 자살예방체계 구축
 - 마. 자살위험자 발견 및 사후관리
 - 바. 자살실태조사 및 심리부검
 - 사.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, 자살자의 유족에 대한 지원 및 사후관리
- 아. 그 밖에 자살예방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제10조(계획수립의 협조) ① 보건복지부장관,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·도지사는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과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, 지방자치단체, 관계 공공기관, 그 밖에 자살예방활동 관련 단체의 장에게관린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
- ② 제1항에 따라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. 제13조(자살예방센터의 설치) 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)은 자살예방센터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 <개정 2019. 1. 15., 2022. 6. 10.>
 - 1. 자살 관련 상담
 - 2. 자살위기 상시현장출동 및 대응
 - 3. 자살시도자 사후관리
 - 4. 자살자의 유족 지원 및 관리
 - 5. 자살예방 홍보 및 교육
 - 6. 자살예방 관련 종사인력에 대한 교육 훈련
 - 7. 그 밖에 자살예방 및 자살자의 유족 지원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
 -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 「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둘 수 있다. <개정 2016. 5. 29., 2022. 6. 10.>
 - ③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.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위탁업무의 수행에 드는 비용을 보조할수 있다. <개정 2022. 6. 10.>
 -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수시로 신고를 받을 수 있는 자살예방용 긴급전화를 설치·운영 하여야 한다.
 - ⑤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 및 제4항에 따른 긴급전화의 설치 ·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17조(자살예방 상담·교육)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·단체 및 시설의 장은 자살방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하여 자살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주무부처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은 자살예방 교육의 실시 결과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.
 - 1. 국가기관,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
 - 2. 「노인복지법」에 따른 노인복지시설
 - 3. 「사회복지사업법」에 따른 사회복지시설
 - 4. 「초・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
 - 5. 그 밖에 자살예방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②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과 자살예방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·단체 및 시설의 장은 자살방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하여 자살예방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 - ③ 제1항 각 호 및 제2항에 따른 기관·단체 및 시설의 장과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은 자살방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하여 자살예방 상담을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-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살위험자 등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자살예방 상담·교육을 실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.
- 1. 「119구조·구급에 관한 법률」 제8조에 따른 119구조대의 구조대원 및 같은 법 제 10조에 따른 119구급대의 구급대원
- 2. 「국가공무원법」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찰공무원
- 3. 「지방공무원법」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
- 4. 「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」 제43조에 따른 사회 복지전담공무워
- 5. 그 밖에 자살예방 상담·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시도자 및 자살자 유족의 의견을 반영하여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자살예방 상담·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·보급하고, 자살예방 상담·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기관·단체 및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.
-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자살예방 상담·교육, 방법 및 내용, 자살예방 교육의 실시 횟수 및 결과 제출 절차와 제5항에 따른 프로그램의 개발·보급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□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 (약칭: 자살예방법 시행령) [시행 2022. 12. 11.] [법률 제18900호, 2022. 6. 10., 일부개정]
- 제8조(자살예방센터 설치·운영의 위탁) ①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은 자살예방센터의 설치·운영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있다. <개정 2017. 5. 29., 2022. 12. 9.>
 - 1. 「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조제4호에 따른 정 신건강증진시설
 - 2.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
 - 3.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16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
 - 4. 그 밖에 자살예방에 관한 전문 인력과 능력을 갖춘 비영리법인 및 단체
 -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해당 민간 기관 및 단체의 전문성・인력 ·시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.
 - ③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려면 미리 위탁의 기준, 절차 및 방법 등을 위탁하는 기관의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. <개정 2022. 12. 9.>
 - ④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 및 단체 등의 명칭과 위탁업무의 내용을 위탁하는 기관의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. <개정 2022. 12. 9.>

[제5조에서 이동, 종전 제8조는 제11조로 이동 <2019. 6. 11.>]

- □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(약칭: 정신건강복지법) [시행 2023. 6. 13.] [법률 제19464호, 2023. 6. 13., 일부개정]
- 제3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<개정 2020. 3. 4.>
 - 1. "정신질환자"란 망상, 환각, 사고(思考)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.
 - 2. "정신건강증진사업"이란 정신건강 관련 교육·상담, 정신질환의 예방·치료, 정신질환자의 재활,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복지·교육·주거·근로 환경의 개선 등을 통하여 국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는 사업을 말한다.
 - 3. "정신건강복지센터"란 정신건강증진시설, 「사회복지사업법」에 따른 사회복지시설(이하 "사회복지시설"이라 한다), 학교 및 사업장과 연계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사회에서의 정신건강증진사업 및 제33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사업(이하 "정신건강증진사업등"이라 한다)을 하는 다음 각 목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.
 - 가.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·운영하는 기관
 - 나. 제15조제6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
 - 4. "정신건강증진시설"이란 정신의료기관,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을 말한다.
 - 5. "정신의료기관"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.
 - 가. 「의료법」에 따른 정신병원
 - 나. 「의료법」에 따른 의료기관 중 제19조제1항 후단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된 의원
 - 다. 「의료법」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에 설치된 정신건강의학과로서 제19조제1항 후단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기관
 - 6. "정신요양시설"이란 제22조에 따라 설치된 시설로서 정신질환자를 입소시켜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.
 - 7. "정신재활시설"이란 제26조에 따라 설치된 시설로서 정신질환자 또는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(이하 "정신질환자등"이라 한다) 의 사회적응을 위한 각종 훈련과 생활지도를 하는 시설을 말한다.